# 議案番號 HT

題 目:大淸湖 特別對策地域內 環境基礎施設

運營費 分擔에 관한 協約書 改正 同意案

提出年月日: 1995년 3월 일

提 出 者:大田廣域市長

### □提案理由

- ㅇ 동 협약서의 유효기간이 매년마다 재협의토록 규정됨에 따라
- ㅇ 대청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에 관한 자치단체(대전 · 충남 · 충북)간 협약서를 개정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함

## □主要骨子

ㅇ 동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1994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 것을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 매년마다 재협의토록 함

#### □ 其 他

ㅇ '94 부담금 정산

(단위: 백만원)

지자체별	'94 분담액	'94 집행액	정산잔액	비고
계	1,882	1,177	705 <sub>.</sub>	
대 전	982	614	368	옥천하수처리장
충 남	362	227	135	운영비 절감
충 북	538	336	202	

ㅇ '95 운영비 분담액

(단위: 백만원)

		The second party				
지 자 체	'95 운약	हेमो	'94 운영비	'95 분담액	비	_
	(A)	%	잉여금(B)	(A - B)	ב ום	고
계	1,910	100	705	1,205		
대 전	.997	52.2	368	629		
충 남	367	19.2	135	232		
충 북	546	28.6	202	344		

大淸湖特別對策地域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關한 協約書(案)

# 신・구조문 대조표

. ~ 을	~ 로		
부 칙	부 칙		
제 2조(유효기간)	제 2조(유효기간)		
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매년마다 재협의토록 한다	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매년마다 재협의토록 한다		

# 大淸湖 特別對策地域內 環境基礎施設 運營費 分擔에 關한 協約書

- 第1條(목적) 본 협약은 대청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, 고시된 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되는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의운영,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전광역시장,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분담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第2條(준수의무) 대전광역시장,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는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지며,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기관인 충청북도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- 第3條(비용분담대상시설의 범위) 본 협약에 의하여 운영, 관리비를 분담하여야하는 시설은 특별대책지역안에서 발생하는 오,폐수 (공장폐수를 제외한다)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, 운영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(이하 "분담대상시설"이 라 한다)로 한다.
  - 1. 하수종말처리장
  - 2. 간이오수처리장
  - 3.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처리장
- 第4條(운영비 총액의 산정) ① 충청북도지사는 매년 9월말까지 다음 년도의 분담대상시설에 대한 운영, 관리비의 총액을 1회계년도 단위로 산정하여 대전광역시장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대상시설의 운영, 관리비는 시설의 종류별로 인건비, 전력비, 약품비, 슬러지 처리비, 수선, 유지비 기타 비용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, 관리비 총액은 상호협의에 의하여이를 확정한다.
- 第5條(운영, 관리비의 분담비율)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, 관리비의 총액은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되는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한다.
- 第6條(분담액의 납부) 대전광역시장,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운영, 관리비의 분담액을 분기초월 이내까지 충청북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, 관리 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
- 第7條(예산편성) 분담대상시설의 운영, 관리에 따른 분담액은 충청북도 특별회계에 편성, 운영한다
- 第8條(정산 및 시설운영의 확인) ① 충청북도지사는 익년 1월31일까지 분담대상시설 운영, 관리비 집행내역 및 정산내역을 회계년도기준으로 작성하여 대전광역시장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정산결과에 따라 운영, 관리비의 과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회계년도의 분담액에서 이를 가감한다
  - ③ 대전광역시장, 충청남도지사, 충청북도지사는 시설의 운영사항 및 정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동 회계 운영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영관리기관에서는 시정사 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

- 第9條(분담요소 및 대상시설의 조정) ① 분담의 기준이 되는 원수 배분량 및 지방재정자립도는 별표2에 정한 바에 의하며, 이는 2년마다 상호협의에 의하여 조정한다.
 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.
- 第10條(기타협의) 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 전광역시장,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#### 附則

제1조(시행일) 이 협약은 체결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본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매년마다 재협의토록 한다.

1995. . .

大田廣域市長 (印)

忠清南道知事 (印)

忠清北道知事 (印)

(별표 1)

環境基礎施設 運營, 管理費 分擔方法(제5조 관련)

"갑" 자치단체 부담액 = [α ×TC ] X<sub>1</sub> + [β ×TC ] X<sub>2</sub>

여기서,

α = 0.5(원수배분량 비중)

 $\beta = 0.5$ (재정자립도 비중)

TC = 연간 총운영비

 $X_1$  = 원수배분량 가중치(%)

= "갑" 자치단체 원·정수 급수량 - 자치단체별 원·정수배분량의 합계

 $X_2$  = 재정자립도 가중치 (%)

#### (별표 2)

# 原・淨水配分量 및 地方財政自立度(제9조 관련)

## 가. 원·정수배분량

(단위 : 천m³/일)

ALL COMMENTS AND ADDRESS OF THE PARTY OF THE			
구	분	원 수·정 수	가 중 치 (%)
계		674	100
대 전 광 역	시	430	63, 8
충 청 남	도	113	16.8
충 청 북	도	127	18, 8
충 북 3 급	2	4	0, 6

※ 기준년도: 1992

## 나. 지방재정자립도

구 분	재정자립도 (%)	가 중 치 (%)
계	185.8	100
대전광역시	75.4	40.6
충 청 남 도	40, 1	21.6
충 청 북 도	40, 6	21,9
충 북 3 군	29.7	15.9

※ ('86-'90)평균치